



#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

## 기계공학전공 규정

기계항공공학부  
기계공학전공

### III. 교 육

#### III-3. 기계공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

체정 2001.03.19.  
일부개정 2011.06.01.  
일부개정 2012.11.02.  
일부개정 2013.11.01.  
일부개정 2014.01.21.  
일부개정 2014.09.01.  
일부개정 2015.12.17.  
일부개정 2018.02.08.  
일부개정 2019.12.02.

##### 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및 기계공학부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# 제 2조 (응시자격)

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및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(자살예방)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# 제 3조 (시험일정)

박사과정은 3개 학기 이내에,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에 최소 한번은 실시해야 한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# 제 4조 (심사위원)

각 그룹에서 선출한 심사위원이 필답고사를 출제 및 채점한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# 제 5조 (시험구성)

논문제출자격시험은 그룹의 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로 진행한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# 제 6조 (합격점수)

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 제 7조 (석박사통합과정 추가요구사항)

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및 기계공학부 석사학위는 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도 만족해야 한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 제 8조 (기계공학분야 이외의 석사학위 취득자)

석사학위를 기계분야에서 받지 않은 학생은 제 7조의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에 대한 추가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

#### 제 9조 (재응시)

불합격 시 1회에 한해 재응시 할 수 있으며, 불합격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. 총 2회 불합격 시 박사학위 과정을 지속할 수 없다. 단,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기계공학전공 및 기계공학부 석.박사 학위 취득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추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 [개정 2019.12.02.]

#### 부 칙 <2001.03.19.>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 <2011.06.01.>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11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 3조 (경과조치) 2011년 9월 이전 입학생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, 재학기간 중, 휴학한 자는 휴학한 학기만큼 응시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다.

#### 부 칙 <2012.11.02.>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<2013.11.01., 2014.01.21.>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

① 제 2조 (응시자격)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(2013학년도 입학자까지)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, 박사과정은 3개 학기(석박사통합과정은 5개 학기) 이상 등록한 자로 할 수 있다.

② 제 3조 (시험일정)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(2013학년도 입학자까지)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, 박사과정 입학 후 3학기(석박사통합과정

은 박사과정 인정(3개 학기, 24학점 이수) 후 2학기)째에 응시 할 수 있다.

- ③ 제 9조 (재응시)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(2013학년도 입학자까지)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합격 시 1회에 한해 재응시 할 수 있다.

**부 칙 <2014.09.01>**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5.12.17.>**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

- ① 2조 (응시자격)에 대하여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(자살예방) 교육 이수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 <2018.02.08.>**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9.12.02.>**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 3조 (경과조치)

- ① 제 3조 (시험일정)에 대하여 이 규정개정 전 입학자(2019학년도 입학자까지)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, 박사과정은 구술고사를 응시 자격을 만족시키는 첫 학기에 실시해야 하며,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에 구술고사를 최소 한 번은 실시해야 한다.

② 제 4조 (심사위원)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(2019학년도 입학자까지)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,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 2인으로 구성하되, 심사위원은 연구 주제 관련 강의 담당 교수를 포함한다.

③ 제 5조 (시험구성)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(2019학년도 입학자까지)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,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연구 주제 관련 기초 과목에 대한 구술고사를 시험과목으로 한다. 연구 주제 발표 및 연구주제 관련 2개의 교과목 강의식 발표와 이와 관련된 기초핵심개념 위주 질의 응답 및 평가로 구성한다.

④ 제 6조 (합격점수)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(2019학년도 입학자까지)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, 합격점수는 각 과목이 70점 이상시 합격으로 한다. 심사위원 2인은 전공시험 성적표와 결과보고서를 학부에 제출한다.